

회장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 운영지침

제정 2022. 11. 28.

1. 근거와 목적

이 지침은 『대구광역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3조(선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2항제8호와 제25조의2(정책토론회)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대구광역시체육회장선거의 후보자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라 함)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정한 개최

가. 토론회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한 참가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토론회 운영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모든 후보자가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한다.

나. 위원회가 아닌 다른 단체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단체가 자율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되, 위 “가”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개최 횟수 등 결정

가. 개최 횟수, 개최일시, 장소 등은 토론회 운영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고, 후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나. 토론회의 1회 개최시간은 90분이내로 하되, 초청 대상 후보자수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

4. 참석 의사의 확인 등

가. 후보자는 위원회가 통지한 서식에 따라 토론회의 참석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선거일 전 9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론회에 불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전원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으로 참석확인서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나. 후보자가 토론회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불참사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 후보자가 별지 제1호 서식(후보자토론회 참석확인서)을 제출한 이후 토론회 개최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후보자토론회 불참사유서)을 제출한 경우는 그 후보자를 제외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되, 불참자의 사유는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고지하여야 한다.

라. 위 “다”항의 사유로 토론할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는 토론회의 개최 요건이 되지 아니하므로 위원회가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그 사유를 상대 후보자에게 통지하고, 선거인에게는 문자메시지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5. 사회자의 선정

가. 위원회는 공정한 개최가 가능한 단체 등에 사회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나. 사회자를 선정할 때 진행 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력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 받을 수 있다.

다. 사회자는 추천명단 중에서 위원회가 선정한다.

6. 토론회 진행방식의 결정 등

가. 토론회의 진행방식은 참석할 후보자의 수를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다.

나. 위원회는 진행방식을 결정하여 이를 후보자에게 통지하고,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 또는 참석할 토론자 수가 달라져 진행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다. 진행방식을 변경한 경우는 지체없이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질문사항의 결정

가. 위원회는 질문사항을 수집하여 토론회를 대비하여야 한다.

나. 위원회는 토론방식 등에 따라 질문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8. 토론회의 청중

가. 위원회는 토론회장의 설비나 질서유지 등을 고려하여 청중을 둘 수 있다.

나. 청중의 수와 대상은 위원회가 결정한다.

다. 청중은 토론회의 진행 중에는 박수를 치거나 발언을 하는 등 토론회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9. 토론회에 대한 설명회

가. 위원회는 토론회 개최 전일까지 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나. 설명회에는 후보자 본인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보자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대리인[후보자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지참·제출]이 참석할 수 있다.

10. 토론회장의 설비

가. 위원회가 토론회 장소와 영상물 촬영 담당자를 결정하고, 토론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나. 토론회장에는 후보자와 사회자의 좌석, 토론회와 관련된 음향 및 영상에 필요한 장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토론회장의 설비는 특정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문양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참석대상 후보자가 불참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론자의 좌석 등을 설비하지 아니하며, 토론회장의 설비 후에 불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토론회 시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좌석 등을 철거할 수 있다.

11. 토론회의 발언 순서 등

가. 토론회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설명회 개최 시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첨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이 지명한 사람이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나. 토론회는 사회자가 질문하고 후보자가 답변하는 형식과 사회자를 통하여 후보자 간 상호 질문·답변하는 형식 등으로 진행한다.

12. 토론회의 질서유지

- 가. 사회자는 후보자가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정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발언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은 토론회에서 후보자가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사회자에게 이를 제지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다.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은 토론회에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토론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13. 토론자의 착용·부착물

- 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는 통상적인 장신구나 배지, 선거운동 용 윗옷·어깨띠를 착용·부착할 수 있다.

14. 토론회에서 참고자료의 사용

- 가. 토론자는 A3 용지 규격 이내의 서류·도표·그림·그 밖의 참고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 나.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15. 토론회의 진행

- 가. 사회자는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토론진행표의 시간을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 나. 후보자가 토론회 시작 후에 도착하는 때에는 참석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발언순서는 불참한 후보자의 다음 순서가 순차적으로 앞당겨 진행된다.
- 다. 토론자는 토론회의 진행 중 토론회장을 벗어날 수 없으며, 임의로 토론회장을 벗어난 경우 그 토론자는 토론회장에 다시 입장할 수 없다.
- 라. 참석대상 토론자가 불참하거나 참석 토론자가 토론회 진행 중 임의로 토론회장을 벗어난 경우 사회자는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16. 온라인 생중계와 영상녹화물 게시

- 가. 토론회의 화면구성은 토론자간 최대한 균등하도록 하고, 기조연설과 마무리 발언을 하는 때는 발언하는 토론자만을 비추도록 하여야 한다.
- 나. 토론회는 위원회가 결정한 방법으로 온라인 생중계할 수 있으며, 그 영상녹화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토론회를 개최한 다음 날 12시까지 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7. 다른 단체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안내

- 제25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단체가 주최하는 토론회는 그 단체가 자율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개최하여야 하므로 본 지침 “2. 공정한 개최”를 근거로 모든 후보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후보자 정책토론회 참석확인서

1. 선거명: 제16대 대구광역시체육회장선거
2. 개최일시: 2022. 12. 00.(00) 00:00
3. 개최장소: ○○○○○○○○○○
4. 토론회 참석자
 - 가. 참석자별: 후보자
 - 나. 성명:
 - 다. 생년월일(성별) . . . ()

위 본인은 2022년 12월 15일 실시하는 제15대 대구광역시체육회장선거에서 규정 제25조의2에 따라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

인

대구광역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주 : 1. 후보자 인은 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인영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후보자 정책토론회 불참사유서

1. 선 거 명: 제16대 대구광역시체육회장선거
2. 개 최 일 시: 2022. 12. 00.(00) 00:00
3. 토론회 참석자:
 - 가. 참석자별: 후보자
 - 나. 성 명:
 - 다. 생년월일(성별) . . . ()

위 본인은 2022년 12월 15일 실시하는 제16대 대구광역시체육회장선거에서 규정 제25조의2에 따른 정책토론회의 불참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증빙자료 부

년 월 일

후보자

인

대구광역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 주 : 1. 후보자 인은 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인영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2. 불참사유에 대한 별도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후보자 정책토론회 설명회 참석 위임장

피위임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후보자와의 관계	

위 사람에게 2022년 12월 15일 실시하는 제16대 대구광역시체육회장선거에서 후보자 정책토론회의 설명회에 참석을 위임함.

년 월 일

후보자

인

대구광역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주) 1. 후보자 인은 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인영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이 력 서

성 명	(한자 :)	사 진
생 년 월 일	년 월 일생 (만 세)	
연락처		

기 간		주요 학력 및 경력 사항	비 고
부 터	까 지		

개 최 년 월 일	사회자 경력 사항	비 고 (대상자)

※ 사회자 경력사항은 각종 학회 또는 토론회 등의 사회 관련 경력을 기재하되 최근 경력부터 순차적으로 기재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이면기재 가능)

년 월 일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합니다.

성 명

①